서울산업대학교기성회규약

제정 1993. 3. 2.

개정 1999. 3. 2.

개정 2000. 3. 2.

제1조(목적) 본 회는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교직원의 후생 및 복지와 긴급한 교육시설,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직원의 사기진작 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다.

제2조(명칭) 본 회는 서울산업대학교 기성회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산업대학교 안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회의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
- 1.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
- 2. 학생 복지 시설
- 3. 학교의 부족시설 설비의 보충과 확충
- 4.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

제5조(학교의 장의 동의) 본 회의 사업계획은 학교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제6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
- 1. 보통회원은 서울산업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.
- 2.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본 회에 상당한

금품을 희사한 자로 한다.

제7조(임원 및 직무)

- 1.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각 명예직으로 한다.
 - 1) 회장 1인
 - 2) 부회장 1인
 - 3) 이사 약간명
 - 4) 감사 1인
- 2.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하고,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- 3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최초의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
- 4.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5. 본 회의 임원은 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. 제8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 본 회는 다음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다.
 - 1. 이사는 각 학부의 장이 학부형 중에서 학부별 2인 또는 3인 이내를 추천한 자로 한다.
 - 2. 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.
- 3. 학교의 장은 그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. 다만, 회장은 될 수 없다. 제9조(회의)
 - 1.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 - 2. 회의의 의결에 있어 2회까지 회의를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미달인 경우에

있어서는 출석인원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.

- 3.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4. 이 외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

- 1.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1) 규약의 제정 및 개정
 - 2) 회장 및 임원의 선출
 - 3) 수입 지출 예산의 결정과 결산의 승인
 - 4)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수정
- 2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11조(회무와 회계사무 처리)

- 1. 회장은 본 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인을 학교 직원 중에서 총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2. 본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설립자에 적용하는 예산회계관련법규, 지 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그 집행은 서울산업 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3. 본 회의 일체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4. 본 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당해 학교의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.

제12조(재정)

- 1. 본 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한다.
- 2. 회원의 회비는 당해 학교장이 정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가

수리된 후에 징수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 제13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따른다.

- 제14조(예산회계 사무의 위임) 본 회의의 예산회계 사무 중 다음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
 - 2. 성립된 예산집행. 다만, 예산의 과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회장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위임한다.
- 제15조(재산의 귀속) 본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서울산업대학교 설립자에 기부한다. 다만,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차한 토지, 시설, 기자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제외한다.

제16조(해산)

- 1. 본 회의 목적사업 완수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산하고 감독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산한다.
- 2. 본 회의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 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울산업대학교와 학교의 감독청에 제출한다.
 - 1) 수입 지출 현계표
 - 2) 재산 목록
 - 3) 재산처분 방법
 - 4) 청산인의 명부 및 결의서
- 제17조(청산)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청산 사무는 이사회가 담당한다. 다만, 학교의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청산인을 위촉할 수 있다. 제18조(청산인의 권리 의무 제한) 청산인은 학교의 장의 지시를 받아 청산

업무를 수행하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담당한다. 제19조(감독) 본 회의 사업과 수입지출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 감 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본 규약은 19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본 규약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종래의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한 기성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부칙

본 규약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